



재해 개요

- 2020. 7. 23.(목) 14:45경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670-28 소재 ○○ 제주압수물 사업소 내 폐농약용기류(유리병, 플라스틱병, 비닐) 보관창고 앞에서 동 보관창고 방향으로 후진하는 화물차량[길이: 8,660(mm), 너비: 2,420(mm), 높이: 3,550(mm), 최대적재량 5톤)에 재해자가 충돌, 바퀴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경로 등 작업계획서 미작성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나,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방지 유도자 등 미배치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나,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미배치하였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경로 등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고지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방지 유도자 등 배치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,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유도하는대로 따라야 함
- 차량과 근로자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(권고사항)
 - 대형 화물차량 후진 시 운전자의 차량후방 시야 확보를 위한 후방카메라, 후방감지기 및 후진시 경보음 발생으로 차량 밖 근로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후진경보기 등을 설치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